

1. 개정이유

청원산림보호직원은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법 제4조)하고 봉급 및 수당 등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영 제6조)하고 있으나 봉급산정의 기준에 있어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는 공무원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봉급 산정의 기준에 있어서도 공무원의 인정기준과 같이 유사경력을 인정하도록 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원산림보호직원의 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의 인정범위를 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호봉인정 기준에 준하도록 개선함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관련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던 것을 산림관련 업무와 관계없이 상근으로 근무한 유사경력을 인정하도록 함(안 제6조 제4호)
- 2) 유사경력 인정범위에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영 제4조의2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 직무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함(안 제6조 제5호 신설)

나. 연관 법률의 명칭 현행화, 조문 정비 등(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정규모”를 “일정 규모”로,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외”를 “제1호 외”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경우 :”를 “경우:”로, “500헥타아르”를 “500헥타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가목외의 경우 : 300헥타아르”를 “가목 외의 경우: 300헥타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중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

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그 밖에 국가기관”을 “국가기관”으로, “산림관련 업무에 상근”
을 “상근”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영 제4조의2에 따른 청원산림보
호직원의 직무와 같은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봉 재확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
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확정하여 이 규칙 시행일
이후 보수에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같은 법</u> ----- ----- ----- --.
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등) ①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u>일정규모</u> 이상 집단화된 사유림”이라 함은 다음 <u>각호</u> 의 사유림을 말한다.	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등) ①----- ----- ----- ----- <u>일정 규모</u> ----- ----- <u>이란</u> ----- ----- <u>각 호</u>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제1호외의</u> 사유림으로서 다음 <u>각목의 1</u> 에 해당하는 사유림	2. <u>제1호 외</u> ----- -- <u>각 목의 어느 하나</u> ----- --
가. 산림소유자가 인접한 산림소유자와 협업에 의하여 산림경영을 하는 <u>경우</u> : 협업 총면적이 <u>500헥타아르</u> 이상의 사유림	가. ----- ----- ----- <u>경우:</u> --- ----- <u>500헥타르</u> --- -----
나. <u>가목외의 경우</u> : 300헥타	나. <u>가목 외의 경우</u> : 300헥타

아르 이상의 사유립

②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경비의 납입)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받은 연도에는 그 배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고, 그 배치통지서를 받은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영 제3조제2항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기관장의 범위) 영 제4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청원자를 말한다.

1. (생략)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르 -----

②-----

----- 제2조제1항에 따른

----- 따
른다.

③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경비의 납입)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

-----.

제5조(청원기관장의 범위) -----

-----이란 -----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현행과 같음)
2. ----- 따른 -----

의 조합장 및 중앙회의 회장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사장 제6조(청원산림보호직원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봉급산정의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그 밖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u>산림관련 업무에 상근</u>으로 근무한 경력 <u><신설></u>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6조(청원산림보호직원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 ----- ----- ----- ----- ---- <u>다음 각 호와</u> ----- -----. 1. ~ 3. (현행과 같음) 4. <u>국가기관</u> ----- ----- <u>상근</u>----- ----- 5. <u>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영 제4조의2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직무와 같은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u>
---	---